奎章閣圖書의 變遷過程에 대한 一研究

愼 鏞 廈*

一. 머 리 말
二. 奎章閣設立期의 奎章閣圖書
三. 開化期의 奎章閣圖書
四. 日帝治下의 奎章閣圖書
五. 서울大學校 管理期의 奎章閣圖書
六. 맺 음 말

一. 머 리 말

奎章閣이 1776년(正祖 即位年)에 朝鮮 第22代王 正祖의 改革을 위한 기구의 하나로 設立된 이후, 〈奎章閣圖書〉는 많은 變遷을 겪어 왔다.

奎章閣設立 당시의 奎章閣圖書는 韓國本이 약 1萬餘册, 中國本이 약 2萬册, 합계 3萬餘册이었다. 1981년 현재 서울大學校圖書館 奎章閣圖書管理室이 관리하고 있는 奎章閣圖書는 韓國本이 25,637種 93,417册, 中國本이 5,317種 51,289册, 합계 30,954種 144,706册에 달하고 있으며, 새로이 奎章閣圖書에 編入된 古圖書까지 합하면 38,405種 165,109册에 달하고 있다.

奎章閣圖書가 이와같이 방대하게 增加된 것은 다른 圖書들이 奎章閣圖書에 끊임없이 編入되어 왔기 때문이었다. 특히 奎章閣圖書 韓國本은 奎章閣 設立 당시(1776년)의 1萬餘册으로부터 1981년 현재 113,820册으로 11倍나 增加하는 큰 變遷을 보이고 있다.

奎章閣에 대해서는 주로 그 設立期를 중심으로 戰前의 日本人들과[1] 戰後의 韓國人學者들에 의하여 研究가 축적되어 왔다.[2] 여기서는 奎章閣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奎章閣圖書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奎章閣 設立 당시부터 現在(1981년)에 이르기까지 奎章閣圖書가 어떻게 變遷해 왔는가를 8段階로 나누어서 간단히 고찰하기로 한다.

---

*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敎授

(1) ① 藤塚鄰, 〈李朝の 學人と 乾隆文化〉, 京城帝國大學法文學會編《朝鮮支那文化の 研究》1929.
② 高橋亨, 〈弘齋王の 文體反正〉《青丘學叢》第 7 號, 1932.
③ 末松保和, 〈奎章閣と 奎章總目〉《小田先生頌壽紀念 朝鮮論集》1934.

(2) ① 金龍德, 〈奎章閣考〉, 中央大學校《논문집》제 2 집, 1957.
② 白 麟, 〈奎章閣 藏書에 대한 研究〉(연세대학교 도서관) 1962.
③ 尹炳泰, 〈奎章閣圖書와 韓國活字印刷史研究〉서울大學校 圖書館《奎章閣》第 1 輯, 1976.
④ 裵賢淑, 〈江都外奎章閣考〉《圖書館學論集》第 6 輯, 1979.
⑤ 李離和, 〈奎章閣考〉《奎章閣》第 3 輯, 1979.
⑥ 鄭玉子, 〈奎章閣 抄啓文臣 研究〉《奎章閣》第 4 輯, 1981 참조.

二. 奎章閣設立期의 奎章閣圖書

第1段階는 奎章閣 設立期의 奎章閣圖書이다.

正祖는 祖王 英祖의 뒤를 이어 1776년 3월 10일 即位하자 바로 그 이튿날인 3월 11일 뒤에 奎章閣이 되는 一閣을 昌德宮 北苑에 세워 御製 御書를 奉安하도록 명하였다. 물론 이 때에 正祖는 아직 이 閣의 이름을 지어 주지 않았으므로 工役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이것을 正祖의 命의 내용에 따라 御書閣이라고 불렀다. 建閣의 工役이 7월에 일단락되자, 正祖는 1776년 9월 25일 始務를 하면서 《奎章閣》이라고 정식으로 명명하였다.

正祖가 이 奎章閣을 하나의 〈機構〉 또는 〈機關〉으로 확립하는 데는 다시 만 5년여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 사이에 그는 組織과 機構를 정비하고 圖書의 蒐集과 整理를 일단 完結하였다. 그리하여 正祖 即位年(1776년)부터 正祖 5年(1781년) 사이를 우리는 奎章閣의 設立期(또는 確立期)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단적인 근거로서 우리는 正祖가 徐浩修에게 명하여 組織과 機構의 整備의 일단락을 의미하는 《奎章閣志》를 이 해에 撰成하였고,[3] 圖書의 整理의 일단락을 의미하는 《奎章總目》을 모두 正祖 5년에 완성했다는 사실을 들 수가 있다.[4]

주의를 요하는 것은 正祖가 이 때 설립한 奎章閣은 하나의 〈機構〉 또는 〈機關〉이고, 그 이전에 梁誠之가 제의한 것이나 肅宗 때 세워진 奎章閣은 하나의 〈閣〉 또는 〈樓閣〉이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世祖 9년 5월에 同知中樞府事 梁誠之가 列聖의 御製 詩文을 麟趾堂 東別室에 奉安하여 〈奎章閣〉이라 이름할 것을 上奏했는데,[5] 世祖는 그 議를 可하다고 하

---

(3) 《內閣日曆》 第8册, 正祖 5年 2月 29日條 「原任直提學 徐浩修曰 奎章閣志 已爲撰成 行將印頒」云云 참조.

(4) 《正祖實錄》 正祖 5年 6月 庚子條
「奎章總目成……丙申初載首先購求圖書集成五千餘卷于燕肆 又移舊弘文館藏本 及江華府行宮所藏皇明賜書諸種益之 又倣唐宋故事 撰訪書錄二卷 使內閣諸位按而購買 凡山經海志祕諜稀種之昔無今有者 無慮數千種 及建閱古觀于昌慶內苑 奎章閣之西南以峙華本 又建西序于閱古觀之北 藏東本 總三萬餘卷 經用紅籤 史用青籤 子用黃籤 集用白籤 彙分類別 各整位置 凡其曝晒出納 皆令閣臣主之 在直閣臣或事考覽 則許令用牙牌請出 至是 命閣臣徐浩修 撰著書目 凡經之類九 史之類八 子之類十五 集之類二 閱古觀書目六卷 西序書目二券 總名之曰 奎章總目」 참조.

(5) 《世祖實錄》 世祖 9年 5月 戊午條.
「臣又竊觀君上御筆與雲漢同其昭回 與奎壁同其粲爛 萬世臣子 所當尊閣而寶藏者也.……乞令臣等勸進御製詩文 奉安于麟趾堂東別室 名曰奎章閣 又諸書所藏內閣 名曰秘書閣 皆置大提學提學直閣應敎等官 堂上以他官帶之 郎廳以藝文祿官兼差 俾掌出納.」 참조.
梁誠之는 여기서 御製 詩文을 奉安하는 곳을 奎章閣이라 부르고 諸書册을 所藏하는 곳은 秘書閣이라고 부를 것을 제의하였는데, 世祖에 의하여 秘書閣의 구상이 弘文館의 형태로 실현되고, 그 후 正祖는 兩者를 合하여 奎章閣을 설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梁誠之의 發議가 正祖朝에 확대되어 實現된 것이었다.

면서도 「設施는 遑急하지 않다」고 하여 그것을 설치하지 않았다.[6] 그 후 肅宗 20년(1694)에 正宗寺 안에 小閣을 별도로 건립하여 列聖의 御製 御筆을 奉安하고 〈奎章閣〉이라는 扁額을 肅宗의 御筆로 써서 걸었다.[7]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歷代王의 御製 御筆을 奉安하는 하나의 〈樓閣〉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正祖가 세운 것은 이와는 달리 하나의 〈機關〉이었다. 1776년에 설립된 하나의 機構 또는 機關으로서의 奎章閣은 크게 나누면 현대적인 용어로 ① 王立圖書館과 ② 王立研究院의 두개의 큰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 小考의 목적에 따라 王立研究院의 기능은 별도로 하고, 王立圖書館의 기능만을 보면, 이것은 다시 세개의 하위 직능을 포함하고 있었다. 즉 ① 列聖의 御製 御筆 御譜의 奉安, ② 一般圖書의 蒐集 保管 閱讀, ③ 王의 公事의 記錄의 작성과 保管 등이다.

이 중에서 正祖가 가장 力點을 둔 것은 둘째의 기능인 圖書의 蒐集 保管 閱讀이라고 생각한다. 첫째의 御製 御筆의 奉安은 그 이전에도 이미 잘 행해져 왔고, 세째의 記錄의 작성과 보관은 예컨대 承政院 같은 他機關에서 그 이전부터 잘 행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正祖가 세운 奎章閣의 가장 큰 특징은 둘째의 圖書의 蒐集 保管 閱讀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은 후에 宗親府에서 御製 御筆의 奉安의 기능을 가져가 버리고 기능이 분리되어 한때 奎章閣이 圖書의 蒐集 保管 閱讀의 기능만으로 운영되기도 했다는 사실에서도 증명된다.

正祖는 즉위하기 전 東宮 시절부터 尊賢閣의 옆에 貞頤堂이라는 한 堂을 건립하고 國內外의 圖書를 방대하게 蒐集하였었다. 즉위한 다음에도 正祖의 圖書에 대한 情熱은 여전해서, 예컨대 中國에서 《四庫全書》를 편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進賀兼謝恩使 李澈에게 《四庫全書》를 購入해 올 것을 명하기도 하고, 《古今圖書集成》 5千餘卷을 중국으로부터 購入해 오기도 하였다.[8]

奎章閣 設立期의 奎章閣圖書(御製 御筆 璿譜 제외)는 《正祖實錄》에 의하면 正祖 5년 현재 약 3萬餘册이었다.[9] 이 圖書들은 ① 正祖의 命을 받고 使臣들이 淸國 燕京의 書肆에서 購入한 《古今圖書集成》 등 中國本, ② 弘文館 藏本을 移置한 圖書, ③ 江華府의 行宮에서 所藏하고 있던 圖書, ④ 奎章閣 閣臣으로 하여금 購入케 한 국내의 山經 海志 秘諜 稀貴本 數千種을 합한 것이었다.

당시의 奎章閣圖書 3萬餘册을 다시 韓國本과 中國本으로 나누어 보면, 韓國本이 약 1萬餘册, 中國本이 약 2萬册이었다. 《奎章總目》에 수록되어 있는 中國本을 계산해보면 총계

(6) 《奎章閣志》 卷 1. 建置第一 참조.
(7) 《奎章閣志》 卷 1. 建置第一 및 〈奎章閣沿革資料〉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三) 참조.
(8) 《內閣訪書錄》(奎 No. 1748) 2卷 1册은 奎章閣 設立期에 正祖와 奎章閣 閣臣들이 淸國으로부터 圖書를 購入하기 위하여 작성한 圖書目錄이다.
(9) 《正祖實錄》 正祖 5年 6月 庚子條 참조.

19,665册으로서 약 2萬册에 가깝고, 나머지가 韓國本이었다.[10]

正祖는 실제로 당시의 奎章閣圖書를 華本(中國本)과 東本(韓國本)으로 나누고, 그 書庫로서 華本所藏을 위하여 奎章閣의 西南에 〈閱古觀〉과 〈皆有窩〉를 짓고, 東本所藏을 위하여 閱古觀의 北쪽에 〈西序(西庫)〉를 지었다.[11] 列聖의 御製 御筆의 奉安閣까지 합하면 奎章閣의 書庫는 다음과 같이 6곳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① 奉謨堂 : 列聖의 御製 御筆 御眞 顧命 遺誥 密敎 璿譜 世譜 寶鑑 狀誌 등을 奉安한 곳으로서, 奎章閣圖書《奉謨堂奉安御書總目》(奎. 9838) 3卷 3册이 그 圖書目錄이다.

② 閱古觀 : 中國本을 所藏하던 書庫로서 上下 2層의 각 2間 넓이의 書庫이었다. 《奎章總目》(奎. 4461)이 그 圖書目錄을 포함하고 있다.

③ 皆有窩 : 中國本을 所藏하던 書庫로서, 閱古觀의 北析에 연달아 3間의 書庫를 지었다. 《奎章總目》(奎. 4461)이 그 圖書目錄이다.

④ 西序(西庫) : 閱古觀의 北쪽에 세운 韓國本을 所藏하던 書庫로서, 《西庫藏書錄》(奎. 7717)이 그 圖書目錄이라 생각된다.

⑤ 書香閣 : 列聖의 御製 御筆 御眞 등을 移奉한 곳으로서 〈移安閣〉이라고도 불렀다. 《書香閣奉安總目》(奎. 7924) 1册이 그 圖書目錄이다.

⑥ 外奎章閣(江都外閣) : 正祖 5년부터 外奎章閣이라 命名하고 正祖 6년부터 列聖의 御製 御筆 璿譜 儀軌 刊本 기타 存案 등을 奉安하였다. 奎章閣圖書《江華府外奎章閣奉安册寶譜略誌狀御製御筆及藏置書籍形止案》(奎. 9133, 9134, 9147, 9143, 9142, 6136, 9139, 9140, 9148, 9137, 9135, 9132, 9138, 9165의 2) 14册이 哲宗朝까지의 그 圖書目錄이다.

奎章閣 設立期의 奎章閣의 機構는 ① 本閣으로서 〈內閣〉을 두고, ② 〈外閣〉으로서 校書館을 두어 일반적으로 外閣이라고 불렀으며 江華에 外奎章閣을 두어 일반적으로 江都外閣이라고 불렀고, ③ 事務와 直宿을 하는 直閣으로서 〈摛文院〉을 두었다. 內閣 안에는 ① 〈奎章閣〉의 扁額을 옮겨다 건 ② 宙合樓, ③ 奉謨堂, ④ 閱古觀, ⑤ 皆有窩, ⑥ 書香閣(移安閣), ⑦ 西序(西庫)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12] 奎章閣 設立期의 奎章閣의 기구를 간단히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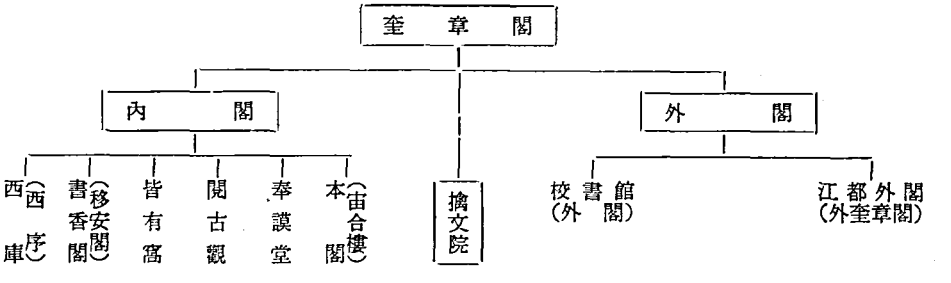

(10) 愼鏞廈, 〈「奎章總目」解題〉《奎章閣》第 4 輯, 1981 참조.
(11) 《正祖實錄》正祖 5年 2月 丙辰條 및 正祖 5年 6月 庚子條 참조.
(12) 《奎章閣志》, 建置第一 참조.

림으로 그리면 위와 같다.

奎章閣 設立期의 奎章閣 管理의 官職은 다음과 같이 提學 이하 70명을 두었다.[13]

① 提學……2명을 두되, 品階는 〈從 2品～從 1品〉이며, 弘文館 大提學 및 弘文館·藝文館의 提學 候補者로 薦望된 人物 중에서 擇用하였다.

② 直提學……2명을 두되, 品階는 〈堂上官 正3品～從 2品〉으로 하고, 弘文館 副提學으로 薦望된 人物 중에서 擇用하였다.

③ 直閣……1명을 두되, 品階는 〈從 6品～正 3品〉으로 하고, 曾經 玉署人으로 임명하였다.

④ 待敎……1명을 두되, 品階는 〈正 9品～正 7品〉으로 하고, 檢閱 注書 說書 등 淸官 候補者로 薦望된 人物 중에서 임명하였다.

이상 6명을 奎章閣의 〈閣臣〉이라고 불렀다. 이 閣臣 밑에 다시 屬官으로서 다음과 같은 職責을 두었다.

⑤ 檢書官……4명을 두되, 閣臣을 補佐하고, 校書 寫書 및 奎章閣 안의 모든 일을 差備하는 일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⑥ 閣監……2명을 두되, 御眞奉安所를 守直하도록 하였다.

⑦ 司卷……2명을 두되, 傳命과 稟啓 등의 일을 管掌하도록 하였다.

⑧ 領籤……2명을 두되, 御製를 寫校하고 奉安하는 등의 일을 管掌하도록 하였다.

⑨ 檢律……1명을 두되, 抄啓文臣의 差備와 講製의 居末과 奎章閣의 雜職官의 推考 등의 일을 管掌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 寫字員 8명, 畵家 10명, 監書 6명을 두고, 기타 吏屬으로서 書吏 閣童 使令 軍士 등을 약 35명 두었다.

奎章閣圖書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實務를 전담한 4명의 檢書官에는 正祖 3년(1779년) 6월 초 1일 李德懋 柳得恭 朴齊家 徐理修 등이 임명됨으로서 當代 最高의 新銳學者들이 奎章閣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14]

正祖는 또한 같은 해인 正祖 3년부터 《皆有窩書目》의 釐正을 提學 徐命膺과 협의하였다.[15] 奎章閣 第一提學이 正祖 4년(1780년) 3월 초 4일 徐命膺으로부터 蔡齊恭으로 교체된 이후에도[16] 正祖는 圖書目錄을 整理하여 編纂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마침내 正祖는 正祖 5년(1781년) 2월에 奎章閣 原任提學 徐命膺에게 奎章閣의 圖書目錄인 《奎章總目》을 編修하도록 명하였다.[17] 그러나 실제로 《奎章總目》의 編修를 담당한 것

(13) 《奎章閣志》, 職官第二 참조.
(14) 《內閣日曆》, 第2册, 正祖 3年 6月 初1日條 참조.
(15) 《內閣日曆》, 第3册, 正祖 3年 11月 23日條 참조.
(16) 《內閣日曆》, 第4册, 正祖 4年 3月 初4日條 참조.
(17) 《正祖實錄》, 正祖 5年 2月 丙辰條.

은 徐命膺의 아들 徐浩修이었다.

徐命膺은 英正時代에 北學派에 속하던 인물로서, 英祖朝에 吏曹·戶曹·兵曹判書를 역임하고, 正祖가 즉위하여 奎章閣을 설치하자 1777년에 奎章閣提學(第一提學)에 임명되었다가 弘文館大提學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徐浩修는 徐命膺의 아들로서 1765년(英祖 41년)에 式年文科에 壯元及第하여 弘文館 副校理·校理를 거쳐서 1770년에 領議政 洪鳳漢과 함께 《文獻備考》의 편찬에 참가하였다. 1776년에 正祖가 即位하자 進賀兼謝恩副使로 淸國에 다녀와서 《燕行記》(奎. 4907) 4卷 2册을 지었으며, 正祖 4년(1780년) 6월 초 7일 奎章閣 直提學에 임명되었다.[18]

奎章閣의 사업에 있어서 徐命膺·徐浩修 이외에 徐命膺의 次子인 徐鼎修가 直閣으로 임명되어 三父子가 함께 큰 貢獻을 하였다. 儒臣들 사이에서 한 機關에 三父子가 勤務하는 것은 相避의 原則上 不當하다는 上疏가 있었으므로 正祖는 이 三父子를 돌려가면서 奎章閣閣臣으로 임명하였다.[19] 그러나 正祖는 이들을 수시로 奎章閣에 불러 들였으므로 《內閣日曆》의 기록에는 이들이 사흘이 머다하고 〈元任〉(前任)의 자격으로 入進하고 있다. 특히 正祖는 奎章閣 圖書整理의 事業은 주로 徐浩修에 의존하였다. 中國으로부터 새로 購入한 圖書가 도착하자 그 看檢을 徐浩修가 담당하였다.[20] 또한 正祖는 江華行宮에 있는 圖書를 整理하기 위하여 徐浩修를 江華留守로 임명하였으며, 徐浩修는 江華의 藏書를 點檢 整理하고 돌아와 그 書目을 보고하였다.[21] 이에 江華에 外奎章閣이 設置된 것이다.

正祖는 徐浩修로 하여금 《奎章總目》과 《御定唐宋八子百選》을 編修케 하기 위하여 職制에도 없는 〈檢校直提學〉에 徐浩修를 임명하였다.[22] 이것은 職制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곧 폐지되었지만, 《奎章總目》의 編修는 〈原任〉直提學으로서 계속 徐浩修가 이를 담당하였다.[23]

奎章閣圖書目錄인 《奎章總目》은 編修에 착수한지 5개월만인 1781년(正祖 5년) 6월에 原任直提學 徐浩修에 의하여 完成되었다.[24] 徐浩修는 이에 앞서 2월에는 《奎章閣志》의 撰修를 完成했으며,[25] 閏 5월에는 正祖가 定選한 《御定唐宋八子百選》을 摛文院에서 活印하여 進上하였었다.[26]

《奎章總目》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서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두가지 記錄을 주목할

「內閣藏書……或購求新書 或翻刻善本 藏之東二樓 又有私刊之書 令外閣官諸道臣隨即印送摛文院內藏書籍 華本藏皆有窩 東本藏西庫 命原任提學徐命膺撰奎章總目」 참조.

(18) 《內閣日曆》 第5册, 正祖 4年 6月 初7日條 참조.
(19) 《內閣日曆》 第5册, 正祖 4年 8月 27日條 참조.
(20) 《內閣日曆》 第8册, 正祖 5年 2月 20日條 참조.
(21) 《內閣日曆》 第9册, 正祖 5年 3月 28日條, 3月 29日條 및 第10册, 正祖 5年 4月 初 1~3日條 참조.
(22) 《內閣日曆》 第10册, 正祖 5年 4月 19日條 참조.
(23) 《內閣日曆》 第11册, 正祖 5年 5月 11日條 참조.
(24) 《正祖實錄》 正祖 5年 6月 庚子條 참조.
(25) 《內閣日曆》 第8册, 正祖 5年 2月 29日條 참조.
(26) 《內閣日曆》 第13册, 正祖 5年 6月 12日條 참조.

필요가 있다.

《正祖實錄》에 의하면 《奎章總目》은 華本目錄인 《閱古觀書目》 6卷과 東本目錄인 《西序書目》 2卷으로 구성되어, 이 兩者를 총합하여 《奎章總目》이라고 부른 것으로 되어 있다.[27] 이 기록에만 의거한다면 韓國本目錄인 《西序書目》은 그 후 逸失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28] 中國本目錄인 《閱古觀書目》 6卷이 현재 남아있는 《奎章總目》 4卷 3册과 同一書目인가 아닌가를 判別하는 문제만 남게 된다.

《內閣日曆》에 의하면, 이것은 《正祖實錄》보다도 더 原初的 資料인데, 徐浩修는 이 때 《皆有窩書目》을 編修하고 있다.[29] 《奎章總目》이 거의 完成되어가던 正祖 5년 潤 5월 29일에도 《皆有窩書目》에 대하여 徵稟할 일이 있어서 入來하고 있다.[30] 《內閣日曆》에 의거한다면 이 때 徐浩修가 編修한 目錄은 《皆有窩書目》으로서의 《奎章總目》인 것이다.

현재 奎章閣圖書도 소장되어 있는 《奎章總目》(奎. 4461) 4卷 3册은 그안에 ① 皆有窩甲庫(經部) ② 皆有窩乙庫(史部) ③ 皆有窩丙庫(子部) ④ 皆有窩丁庫(集部)로 그 書庫表示를 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소장되어 있는 《奎章總目》이 正祖 5년에 徐浩修가 편수한 《皆有窩書目》과 동일한 目錄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增補文獻備考》에는 「奎章總目四卷 正祖辛丑 命徐浩修編」[31]이라고 하여 《奎章總目》이 4卷으로 되어 있으며 徐浩修에 의하여 正祖 5年(辛丑)에 편수되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 《奎章總目》은 물론 현존의 奎章閣圖書 〈No. 4461〉의 《奎章總目》과 동일한 目錄을 가리키는 것이다.

《弘齋全書》에서는 「奎章總目四卷寫本」이라는 제목 밑에 현존의 《奎章總目》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것이 〈閱古觀〉의 華本(中國本)의 書目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秘府藏書之所 華本在閱古觀 東本在西庫 是書所錄者 閱古觀之華本也 周有藏史典簡册 魯有御書在象 魏漢有石渠東觀 宋有龍圖 崇文考古論世之士 每以是占其治之汙隆焉 書籍之重於天下也尙矣 予於丙申初載 肇建奎章閣于內苑 以奉謨訓 峙圖籍旣又購求九流百家之昔無今有者 幾數千百種 遂命閣臣徐浩修著之爲目 每書之下 標其撰人姓名 及所著義例 或節取序跋 以見其規模之槩略 或援引評騭 以明其編摩之得失

(27) 《正祖實錄》 正祖 5年 6月 庚子條 참조.

(28) 《西序書目草本》(서울大 一般圖書 No. 0460, 206)이라는 奎章閣圖書韓國本目錄이 保管되어 있는데, 그 後面에 「大正 六年(1917) 三月 晦 岡田信利氏 藏本으로부터 謄寫」라고 日本語로 적혀있다. 이 目錄의 작성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西庫藏書錄》(奎. 7717) 보다는 늦고 《奎章閣書目》(奎. 11670) 第2册 〈西庫書目〉 보다는 빠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 《西序書目草本》으로 미루어 보면 正祖朝에 《西序書目》이 實在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후 舊韓末이나 日帝治下에서 혹시 日本으로 流出되지 않았을가 하는 推測을 가능케 한다. 물론 어느 日本人이 筆寫한 《西序書目草本》의 原本인 岡田信利라는 日本人이 갖인 奎章閣圖書韓國本書目이 바로 正祖朝에 編修된 《西序書目》일 것이라는 確證도 없고, 鈔寫者가 原本 그대로 筆寫했는지 抄寫했는지도 알 수 없다.

(29) 《內閣日曆》 第11册, 正祖 5年 5月 11日條 참조.

(30) 《內閣日曆》 第12册, 正祖 5年 5月 29日條, 「原任直提學 徐浩修 皆有窩書目有徵稟事入來」云云 참조.

(31) 《增補文獻備考》 卷 245, 藝文考 4.

又或簡帙之廢興 俾資其沿革之考據 而至於別集之類 則人品雄黃文章月朝 亦無不旁搜博采 一展卷瞭然 凡經之類六十 史之類一百二十 子之類一百四十八 集之類二百七十九 繼此而購得者 將隨得錄也」[32]

이상의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결론은 正祖 5년에 徐浩修가 편수한 《奎章總目》과 《皆有窩書目》과 《閱古觀書目》은 모두 동일한 目錄이라는 점이다. 《弘齋全書》나 《增補文獻備考》에 모두 《奎章總目》을 4卷 또는 4卷 3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하면 正祖 5년에 편수한 《奎章總目》은 中國本目錄 뿐이고, 현재 奎章閣圖書로 소장되어 있는 《奎章總目》(奎. 4461) 4卷 3册이 바로 그 書目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해석에 의거하면, 《奎章總目》은 처음부터 中國本目錄 뿐이었고, 奎章閣圖書중의 韓國本目錄은 그 이전이나 이후에 〈별도로〉 편수되었으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첫째의 해석과 둘째의 해석 중에서 어느 쪽이 正確한 것인지 速斷할 수 없다.

필자는 《奎章總目》 편수시기의 韓國本目錄에 해당하는 書目이 바로 《西庫藏書錄》(奎. 7717) 1册이라고 보고 있다. 그 첫째의 증거는 이 書目의 맨 끝에 〈當宁御製類〉의 분류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當宁〉는 그 當時의 임금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在位中의 正祖를 가리키며, 그곳에 수록되어 있는 御製가 正祖 初期의 御製들이기 때문이다.[33] 예컨대 《西庫藏書錄》의 〈當宁御製類〉에 수록되어 있는 〈御製李提督祠堂記印本帖 一〉은 正祖가 撰한 《御製提督李公祠堂記》(奎. 10092)이며, 〈當宁御製類〉의 〈御製御筆大老祠碑文 作册一作, 又五件(翻刻本), 又三十件(翻刻本不粧)〉과 《御製文孝世子神道碑銘 帖本三》은 모두 正祖가 撰한 것으로서 각각 현재의 奎章閣圖書 《大老祠碑銘》(奎. 9986) 1册과 《御製文孝世子神道碑銘》(奎. 10077 및 10321) 1册과 같은 것이다. 이 사실은 모두 《西庫藏書錄》의 〈當宁御製類〉의 〈當宁〉가 正祖를 가리키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이 書目의 〈當宁御製類〉의 분류속에 正祖의 御製가 《內閣受敎帖》《內閣聯句帖》 등과 같은 것을 포함해도 15種밖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西庫藏書錄》이 正祖朝 중에서도 正祖初期에 편수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둘째의 증거는 《西庫藏書錄》에 수록되어 있는 《八子百選》의 保管과 記載에 관한 것이다. 이 《八子百選》은 正祖가 選定하여 徐浩修에게 命해서 1781년(正祖 5) 6월 12일 奎章閣에서 活字로 刊行한 《御定唐宋八子百選》을 가리키는 것이다.[34] 《西庫藏書錄》에서는 이 《八子百選》의 藏書를 ① 粉唐紙本 1件 3册, ② 毛面紙本 2件 各 3册, ③ 簡壯紙本 2件 各 3册, ④ 京壯紙本 2件 各 3册, ⑤ 鄕壯紙本 2件 各 3册, ⑥ 白綿紙本 10件 各 3册, ⑦ 楮注紙本 40件 各 3册, ⑧ 寧邊紙本 15件 各 4册, ⑨ 完紙本 10件 各 3册, ⑩ 慶紙本 10件 各 3册,

(32) 《弘齋全書》 卷 183, 群書標記 9.
(33) 《西庫藏書錄》 〈掌宁御製類〉 참조.
(34) 《內閣日曆》 第12册, 正祖 5年 閏 5月 初 6日條 「御定唐宋八子百選 活印始役 于內擒文院 原任直提學 徐浩修 監董」 및 同上 第13册 正祖 5年 6月 12日條 「御定唐宋八子百選 徐浩修進上」 참조.

⑪ 天銀紙本 30件 各 2册, ⑫ 別簡壯紙本 1件 3册, ⑬ 劣品白紙本 24件 各 2册 등 14種의 서로 다른 종이에 印刷한 册數를 기록하고 있다.[35] 이것은 《西庫藏書錄》이 正祖가 《八子百選》을 간행한 직후에 編修되었음을 보강하여 증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奎章閣 設立期의 圖書目錄은 中國本目錄으로서 《奎章總目》(奎. 4461) 4卷 3册이 보관되어 있고, 韓國本目錄으로서 《西序書目》의 行方은 알 수 없으되, 《西庫藏書錄》(奎. 7717) 1册이 보관되어 있는 셈이다.

徐浩修는 奎章閣圖書目錄인 《奎章總目》을 편수함에 있어서 中國의 分類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前人의 分類法에 加減〔損益〕을 가하여 지나치게 細分된 것은 合하고 지나치게 合해진 것은 細分해서 奎章閣圖書의 실태에 알맞게 고쳐서 모두 34類의 分類法에 의거하여 圖書目錄을 작성하였다.[36] 이 圖書目錄에 의하여 우리는 奎章閣 設立期의 奎章閣圖書 中國本의 정확한 書目과 실태를 알 수 있다.

奎章閣은 正祖 當代에는 王立圖書館과 王立研究院의 기능을 함께 수행했으나, 正祖 승하 후에는 사실상 王立研究院의 기능은 폐지되고 王立圖書館의 기능만 남아서 奎章閣圖書도 별 變動없이 哲宗 末年까지 전승되었다.

第 2 段階는 興宣大院君 執政時代의 奎章閣圖書이다.

興宣大院君 李昰應은 執權 후 王權强化策의 一環으로 자기의 친형 興寅君 李最應의 上疏를 받아 들여,[37] 종래의 宗簿寺를 宗親府에 통합하여 확대 개편하고, 高宗 元年(1864) 4월 11일 종래 奎章閣에서 관리하던 御製 御筆 등과 璿源譜牒 등을 宗親府에 移管시키었다.[38]

大院君은 高宗 2년(1865)에 景福宮을 重建하면서, 宗親府의 청사로 景福宮 建春門의 東쪽에 302間의 건물을 高宗 4년(1867)에 竣工하였다. 이에 따라 한 때 奎章閣도 摛文院이 昌德宮 北苑에서 景福宮 내의 宗親府 建物로 移轉하였다.

奎章閣은 이 때 다시 한번 圖書目錄을 작성했는데, 이것이 《奎章閣書目》(奎. 11706) 2册이다. 景福宮 안으로 이전한 摛文院은 書庫로서 2層 1棟과 單層 1棟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현재 남아있는 《奎章閣書目》(奎. 11706)은 원래 3册이었는데, 1册이 逸失되었다. 逸失된 册이 單層 1棟 書庫의 書目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존하는 2册은 2層 1棟의 書目으로

(35) 《西庫藏書錄》〈文章類〉 참조.

(36) 《奎章總目》 凡例.
「凡書分四部 自魏之荀勗始 而部各有類 類各異例 太細則眩於割裂 太簡則傷於模糊 究厥流品之相煊 實惟折衷之爲難 故此書爲類凡三十四 而條文創義 損益前人 疏其似而合之者 寧失於細 不得不分 同其類而分之者 寧失於簡 不得不合 晏墨之俱列雜家 所以規七略也 董荀之並歸儒家 所以正通志也 譜系目錄之折爲二類 辨乎馬氏也 天文曆籌之進於兵刑 鑑乎史志也 讖緯五行之不著 闕文也 道流釋氏之附後 黜異也 從此購刊之書 雖不知爲幾千萬卷 而其宏綱大目 皆即此乎在 不必如唐之訪書錄 宋之求書錄 隨得隨志紛紜無統也」 참조.

(37) 《日省錄》 第 8 册, 高宗元年 4月 11日條 참조.

(38) 《高宗實錄》 高宗元年 4月 11日條 참조.

서, 〈樓上庫〉(2層書庫)에는 주로 中國本과 《日省錄》《綸綍》 등을 藏置하고, 〈樓下庫〉(第1層 書庫)에는 주로 韓國本을 藏置하였다. 《奎章閣書目》(奎. 11706)에 의하여 〈樓上庫〉와 〈樓下庫〉의 奎章閣圖書의 보관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39]

〔樓上庫册〕 北一櫥(欽定書經等), 北二櫥(經解等), 北三櫥(春秋彙纂等), 北四櫥(讀史謾錄等), 北五櫥(古史等), 北六櫥(綏寇紀略等), 北七櫥(漢書後集等), 北八櫥(遊宦紀聞等), 北九櫥(稽圖新術等), 北十櫥(大工雛形等), 北十一櫥(長江圖說等), 南一架(敬業堂集等), 南二架(弇州四部稿等), 南三架(汪太極集等), 南六架(韓文等), 南七架(明儒學案等), 南八架(安窩集等), 南九架(馮少墟集等), 南十架(五禮通考等) 以上 14,722卷. 〈附〉 日省錄 2,161卷, 綸綍 504卷, 章箚彙編等 183卷, 族子及帖(綏陵碑等族子 268件, 帖 24卷), 不帙類(孟子註疏等 2,659卷) 以上 5,805卷.

〔樓下庫册〕 北一架(列聖御製等), 北二架(列聖御製等), 北三架(國朝樂章等), 北四架(景陵輓章等), 北五架(純祖大王玉寶草圖等), 北六架(毅齋漫筆等), 北七架(御定朱書百選等), 北八架(春秋等), 北九架(大學類義等), 北十架(資治通鑑等), 南一架(谷雲集等), 南二架(南塘集等), 南三架(耐齋集等), 南四架(杜陸分韻等), 南五架(令旨帖等), 南六架(企齋集等), 南七架(柳川集等), 南八架(唐詩畫譜等), 南九架(經緯說等), 南十架(擊壤集等), 南十一架(禮疑類輯等), 南十二架(左氏輯纂等), 南十三架(朱書分類等), 南十四架(旅軒集等), 別一架(邑誌等), 別二架(豊壤趙氏世譜等), 別三架(璿源譜略等), 別四架(閣志), 不帙類(列聖御製散帙等) 以上 11,066卷.

大院君 執政期에 奎章閣은 그 기구가 약간 縮小되고, 奎章閣圖書도 御製 御筆 璿源譜牒 등이 宗親府에 移管됨으로써 一般中國本과 韓國本만 奎章閣의 管理下에 남아서 약간 減少되었다고 볼 수 있다.

三. 開化期의 奎章閣圖書

第3段階는 甲午更張(1894년~96년)에 의한 奎章閣의 改編이다.

開化派政府는 1895년 4월 초 2일 宮內府官制를 반포하면서 奎章閣을 〈奎章院〉으로 개칭하고, 신설한 宮內府의 한 部署로 개편하였다. 그리하여 奎章院은 侍從院 會計院 內藏院 濟用院과 함께 宮內府의 附屬機關으로 되었다.

奎章院은 「王室 典籍及 記錄을 保管하고 列聖의 御製 御筆 當宁御眞을 奉藏하는 事務를 掌理홈」이라고 그 職務를 넓히어, 종래 宗親府가 분리하여 관리하던 御製 御筆 璿譜 등도 奎章院에서 이를 통합하여 奎章閣圖書 韓國本 및 中國本과 함께 관리하도록 하였다.[40]

奎章院에는 卿 1인을 勅任으로 두고, 主事 2인을 判任으로 두었다.

奎章院의 附屬機關으로는 ① 校書司와 ② 記錄司를 두었다. 校書司에서는 「王統譜 王族譜를 奉藏하고 鑄字를 保管」하도록 하여 長 1인(奏任)과 校書 2인(判任)을 두었는 바, 甲

(39) 〈奎章閣圖書韓國本沿革〉《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 1965에 《日省錄》〈綸綍〉〈章箚彙編〉〈族子及帖〉〈不帙類〉 등이 別棟單層에 藏置되어 있던 것으로 잘못 記錄하고 있어서, 이들이 〈樓上庫〉에 藏置되어 있었음을 밝혀서 고치기 위해 그 書架區分을 再收錄하였다.

(40) 《高宗實錄》 高宗 32年 4月 初2日條 참조.

午更張 무렵에는 璿譜는 여기서 관리하게 되었다. 記錄司에서는 「保存文書를 記錄하는 事務를 掌」하도록 하여 長 1인(奏任)과 主事 4인(判任)을 두었다.[41]

開化派政府는 1896년 11월 10일에는 다시 宮內府官制를 改定하면서 奎章院의 校書司와 記錄司를 廢止하고, 그 대신 直學士 1인을 增置하였다.[42] 奎章院의 機構와 機能은 축소되고, 관리하는 圖書는 御製 御筆 璿譜 등이 移管됨으로서 증가된 셈이었다. 開化派政府의 國家와 國王과 王族을 구분하고 王室에 制約을 가하려는 노력의 일단이 약간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

甲午更張內閣이 1896년 2월 이른바 俄館播遷으로 붕괴된 후, 守舊派政府는 1897년 1월 4일 奎章院을 다시 〈奎章閣〉으로 환원하여 개칭하고, 奎章閣卿을 다시 奎章閣學士로 개칭하였다.[43] 그러나 宮內府에 부속된 奎章閣의 機構는 그대로 두었다. 奎章閣이 奎章院으로 개칭되었던 기간은 약 1년 8개월 정도에 불과했던 셈이다.

이 시기에 奎章閣이 관리하는 圖書는 종래의 宗親府의 職務가 통합됨으로서 확대된 셈이나, 현재까지의 자료로서는 이 시기에 별도의 圖書目錄을 편수한 것 같지는 않다.

第4段階는 1905년 이후 舊韓末에 있어서의 奎章閣圖書이다.

大韓帝國政府는 1905년(光武 9) 3월 4일 宮內府官制를 改定하면서 역시 奎章閣을 弘文館과 함께 宮內府에 부속시키었으며, 奎章閣 管理의 직임으로서 學士 1인(勅任), 直學士 1인(勅任), 直閣 1인(奏任), 待制 1인(奏任), 主事 4인(判任)을 두었다.[44] 물론 奎章閣圖書에는 별 變動이 없었다.

奎章閣圖書에 大變動이 일어난 것은 高宗이 日帝의 壓力으로 讓位하고 純宗이 즉위한 후 나라가 日帝의 植民地로 전락해가는 과정 속에서 皇室이 皇室財產을 確保하려고 노력하고 日帝統監府는 皇室財產을 축소정리하려고 노력하던 渦中의 일이다.

大韓帝國政府는 1907년 11월 27일(布達은 11월 29일) 宮內府官制를 대대적으로 改定하면서, 弘文館을 宮內府에서 떼어내어 폐지하고 奎章閣의 地位를 크게 격상시키었다. 奎章閣은 ① 帝室의 典籍과 文翰 記錄의 保管, ② 列聖의 御製 御章 御眞과 璿源譜牒의 管掌, ③ 進講과 代撰과 宗室에 관한 事務의 管掌, ④ 議謚와 祭典에의 參列 등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그 직능이 크게 확대되었다.[45] 이것은 圖書管理와 記錄管理 이외에 종래의 宗親府의 業務를 완전히 奎章閣에 통합시킨 것이었다.

이와 동시에 奎章閣의 職任도 ① 大提學 1인(勅任), ② 提學 10인 이내(勅任), ③ 副提學 10인 이내(勅任 또는 奏任), ④ 直閣 10인 이내(奏任)를 임명하도록 하고 이를 名譽官으로

(41) 《高宗實錄》 高宗 32年 4月 初2日條 참조.
(42) 《高宗實錄》 高宗 32年 11月 10日條 참조.
(43) 《日省錄》 高宗 33年 음력 12月 初2日條 및 《高宗實錄》 建陽 2年 1月 4日條 참조.
(44) 《高宗實錄》 光武 9年 3月 4日條 참조.
(45) 《純宗實錄》 隆熙元年 11月 27日條 참조.

하였다.[46]

이 외에 閣務의 顧問으로서 祗候官 10인을 勅任으로 임명하되 名譽官으로 하였다.

閣務를 總理하고 職員을 監督하는 직무로서는 實務責任者로 〈卿〉 1인을 두고 勅任으로 하였다. 그 밑에 卿의 補佐官으로서 ① 記注官 2인(勅任 혹은 奏任), ② 典製官 2인(勅任 혹은 奏任)을 두고, 庶務의 官吏로서 ③ 主事 4인(判任)을 두었다.[47]

이 무렵에 奎章閣圖書에 대한 點檢과 圖書目錄의 작성이 있었다. 《奎章閣書目》(奎. 11670) 3册은 이 무렵까지의 奎章閣圖書目錄으로 추정된다. 그 第1册 《閱古觀書目》에 《植物學》《化學初階》《大英國志》《日本地誌提要》《組合之事》《蒸汽機關問答》《內科闡徵》《百科全書》《大日本國海圖》 등과 같은 新刊 新書가 포함된 것으로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第2册인 〈西庫書目〉에는 新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他圖書가 大量 編入되기 이전의 奎章閣圖書 韓國本의 실태를 이를 보고 알 수 있다. 第3册 〈摛文院書目〉에는 주로 御製 御筆 璿譜 御定諸書 唐板 등의 書目이 수록되어 있다. 《奎章閣書目》(奎. 11670)에 수록되어 있는 册數는 ① 〈閱古觀書目〉이 25,301册(卷), ② 〈西庫書目〉이 8,912册(卷), ③ 〈摛文院書目〉이 6,050册(卷) 合計 40,263册(卷)이다.[48]

大韓帝國 宮內府는 1908년 9월 23일 奎章閣의 機構를 新式으로 改定하여 ① 典謀課 ② 圖書課 ③ 記錄課 ④ 文事課의 4課를 두고 다음과 같이 그 업무를 분담시키었다.[49]

(ㄱ) 典謀課

① 璿源譜牒과 敦寧譜牒의 編纂 修正 및 保管에 관한 사항.

② 列聖의 御製 御筆 御章 御眞의 圖寫 및 尙藏에 관한 사항.

③ 奉審 및 祭典 參列에 관한 사항.

(ㄴ) 圖書課

① 圖書의 保管 및 出納에 관한 사항.

② 圖書의 整理 및 分類에 관한 사항.

③ 圖書의 購買 및 繕寫에 관한 사항.

④ 圖書의 原版 保管에 관한 사항.

(ㄷ) 記錄課

① 公文書類의 編纂 및 保管에 관한 사항.

② 公文書類의 整理 및 分類에 관한 사항.

③ 綸綍 日省錄 上奏文 儀軌 册文 및 簇子의 尙藏에 관한 사항.

④ 史庫에 관한 사항.

---

(46) 《奎章閣日記》 第1册, 隆熙元年 12月 1日條 참조.
(47) 《純宗實錄》 隆熙元年 11月 27日條 참조.
(48) 《奎章閣書目》(奎. 11670) 3册에서 計算함.
(49) 宮內府大臣官房調査課編, 《宮內府規例》 1910, pp. 48~50. 〈奎章閣分課規定〉 참조.

(ㄹ) 文事課

① 進講 및 代撰에 관한 사항.

② 尊號 및 謚號에 관한 사항.

③ 綸綍 및 日省錄 編纂에 관한 사항.

④ 史册의 起草 및 修正에 관한 사항.

⑤ 他課 主管에 不屬한 사항.

奎章閣이 이상과 같이 체제가 달라지고 직능이 확대됨에 따라 奎章閣이 관리하는 圖書도 크게 내용이 달라지고 數量도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奎章閣이 編修한 《日省錄》 이외에 《承政院日記》《備邊司謄錄》을 비롯하여 各官署의 〈日記〉〈謄錄〉〈存案〉…등이 奎章閣에 移管되었다. 오늘날의 奎章閣圖書에 방대한 분량의 官撰 〈記錄類〉가 들어 온 것은 이 때의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奎章閣의 記錄課에서 〈史庫〉를 관리하게 됨에 따라 京畿史庫(北漢山 行宮)의 藏書와 經板閣의 板本과 鑄字가 奎章閣에 移管되었다.[50] 鼎足山城 太白山城 五臺山城 赤裳山城의 史庫의 藏書도 모두 奎章閣의 管掌下에 놓이게 되었다. 江華의 鼎足山城 史庫의 藏書의 일부는 이 때 실제로 서울로 운반되었고, 다른 史庫의 藏書는 經費不足으로 現地에 그대로 둔채 奎章閣이 이를 관리하였다. 《朝鮮王朝實錄》 등 다수의 國寶級 寶物級 圖書들이 현재의 奎章閣圖書 안에 들어오게 된 機緣도 이 때 만들어진 것이었다.

또한 奎章閣은 弘文館 集玉齋 侍講院의 藏書를 點檢하고 이 藏書들을 奎章閣에 집결시켰다. 《弘文館書目》(奎. 11711) 《集玉齋書籍調査記》(奎. 11705) 《集玉齋目錄外書册》(奎. 11703) 《集玉齋書籍目錄》(奎. 11676) 등은 이 때(1908) 만든 書目이다. 侍講院의 藏書目錄은 《春坊藏書總目》(奎. 11671)이 이미 1905년(光武 9)에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奎章閣圖書에 弘文館 集玉齋 侍講院의 藏書印이 찍힌 圖書들이 다수 있는 것은 모두 이 때 奎章閣의 管理에 編入된 도서들이다.

奎章閣은 이 무렵에 書院의 藏書도 일부 조사했으며,[51] 圖書의 集結뿐 아니라 《國朝寶鑑》의 纂輯 등의 編纂事業도 준비하였다.[52]

奎章閣은 본래의 奎章閣圖書와 弘文館 集玉齋 侍講院 등 他機關의 藏書로서 새로 編入되어 온 도서를 1909년에 〈帝室圖書〉로 命名하기로 결정하고, 1909년 11월 25일 「帝室圖書保存規定」과 「帝室圖書貸出規定」(1909년 11월 9일, 1909년 12월 15일 改定)을 만들었다.[53] 全文 10條로 된 「帝室圖書保存規定」에 의하면 奎章閣圖書課가 〈帝室圖書〉를 保管管理하되 圖書原簿와 圖書目錄을 작성하고 〈帝室圖書之章〉의 藏書印을 날인하도록 규정하였다. 현재

(50) 《北漢册目錄》(奎. 26740) 1册 참조.
(51) 《慶州府校院書册目錄》(奎. 7720) 1册 참조.
(52) 《奎章閣日記》 第23册, 隆熙 3年 10月 23日條 참조.
(53) 《宮內府規例》 pp. 192~207, 〈帝室圖書保管規定〉 및 〈帝室圖書貸出規定〉 참조.

의 奎章閣圖書 중에 〈弘文館〉〈集玉齋〉〈侍講院〉 기타 藏書印과 함께 〈帝室圖書之章〉의 藏書印이 찍힌 것은 이러한 事由로 이때 날인한 것이다.(54)

奎章閣은 이 때 帝室圖書의 閱覽과 貸出을 허가하였다. 一般人는 帝室圖書를 貸出하고자 할 때에는 第2號書式에 의한 借覽證을 기재하여 奎章閣圖書課에 제출 청구하면, 1인 1시에 3部 9册의 범위 내에서 30일을 期限으로 貸出하였다. 閱覽은 圖書課 閱覽室에서 閱覽을 허가하되 閱覽時間은 執務時間 이내로 한정하였다.(55)

奎章閣은 이 때 새로 編入된 官衙의 記錄類에 대해서도 1909년 6월 11일 全文 26條로 된 상세한 「宮內府記錄編纂保存規定」을 만들어 奎章閣記錄課에서 記錄類의 整理事業을 진행하였다.(56) 그러나 記錄類에 대해서는 宮內府職員에게만 閱覽과 貸出을 허가하고 一般人의 閱覽과 貸出은 허가하지 않았다.(57)

奎章閣은 이 때 記錄課에서 관리하는 記錄類를 除外하고, 圖書課에서 編入하여 관리하는 帝室圖書로서, ① 奎章閣 ② 弘文館 ③ 侍講院 ④ 集玉齋 ⑤ 北漢城 行宮의 藏書 약 10萬餘册을 四部分類法에 의하여 分類整理한 다음, 1909년 11월에 《帝室圖書目錄》이라는 題下의 假目錄을 편수하여 간행하였다.(58) 이 目錄은 물론 말 그대로 臨時目錄이지만 이를 통하여 記錄類를 제외한 舊韓末의 奎章閣이 관리한 圖書의 實態를 상당히 정확하게 알 수 있다.(59)

奎章閣은 이외에도 韓國本目錄으로 《朝板圖書目錄》을 작성하고,(60) 中國本目錄으로 《唐板圖書目錄》을 만들었으며,(61) 貴重圖書目錄을 만들었으나 간행되지는 않았다.(62)

위에서 든 圖書目錄들과 藏書印을 통하여 우리는 현재의 奎章閣圖書가 舊韓末에 어떠한 實態로 統合되었는가를 그 機關의 藏書別로 거의 정확히 가려낼 수 있다.

奎章閣은 나라가 日帝의 植民地로 되기 直前인 1910년 8월 20일 그 마지막의 儀式으로 朴趾源 丁若鏞 등 大實學者를 비롯하여 鄭礦 成悌元 成運 安敏學 蘇輝冕 朴文一 金平默 徐起 俞莘煥 등 朝鮮王朝가 奎章閣創設 후에 배출한 불우한 學者들에게 〈奎章閣提學〉을 追贈하였다.(63) 그리고 약 일주일 후 1910년 8월 29일 日帝의 强占과 함께 奎章閣은 閉鎖되었다.

---

(54) 奎章閣이 이때 〈帝室圖書館〉을 건립하려 했다는 一說이 있으나 分明치 않다. 奎章閣의 資料에는 이를 뒷받침 할만한 記錄이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55) 《宮內府規例》〈帝室圖書貸出規定〉 第2條 및 第3條 참조.
(56) 《宮內府規例》 pp. 163～190, 〈宮內府記錄編纂保存規定〉 참조.
(57) 《宮內府規例》 pp. 190～192, 〈宮內府記錄貸出規定(1909. 4. 26)〉 참조.
(58) 奎章閣圖書課編 《帝室圖書目錄》(서울大一般圖書. 017. 1, K962d) 참조.
(59) 奎章閣圖書課 《圖書册數表》(奎. 2676) 1册 참조.
(60) 奎章閣圖書課 《朝板圖書目錄》(奎. 26725) 4册 참조.
(61) 奎章閣圖書課 《唐板圖書目錄》(奎. 26771) 4册 및 《唐板目錄》 4册 참조.
(62) 《貴重圖書目錄》(古. 016. 09-G995) 1册 참조.
(63) 《奎章閣日記》 第33册, 隆熙 4年 8月 20日條 참조.

四. 日帝治下의 奎章閣圖書

第5段階는 日帝朝鮮總督府가 奎章閣圖書를 管理하던 시기이다.

日帝는 1910년 8월 韓國併吞과 동시에 奎章閣을 廢止하였다.

奎章閣圖書는 〈李王職〉의 庶務係 내에 圖書室과 圖書主任을 두어 이를 保管케 하였다. 즉 1910년 8월말 부터 1911년 6월까지 10개월간 奎章閣圖書는 李王職의 圖書主任이 이를 관리한 것이다.[64] (당시 李王職 長官은 閔丙奭이었으며, 圖書主任은 金觀鎬이었다.)

日帝는 1911년 2월에 奎章閣圖書를 朝鮮總督府의 圖書로 占有하기로 결정하여, 1911년 6월에 朝鮮總督府 取調局이 이를 강제로 引受하였다. 이 때 李王職은 圖書와 記錄의 一部를 日帝朝鮮總督府에게 다 넘겨주지 않고 別置하여 그 후 藏書閣圖書를 설치하였다.[65]

日帝朝鮮總督府가 이 때 李王職으로부터 접수한 圖書는 舊韓末 奎章閣圖書課에서 관리하던 圖書 뿐만 아니라 記錄課에서 관리하던 朝鮮王朝 官衙의 記錄類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典謀課에서 관리하던 御製 御筆 璿源譜牒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때 朝鮮總督府 取調局이 李王職으로부터 접수한 圖書와 記錄類 등의 수량은 다음과 같다.[66]

① 圖書課保管 圖書……5,353種(部), 100,187册
② 記錄課保管 記錄類……11,730册
③ 鑄字……653,921字, 71盒
④ 板本……9,507板
⑤ 附屬品 ……12種
⑥ 御製及 御筆刻板 ……471板
⑦ 手帖木刻板 ……53板
⑧ 額 ……24板

이것은 圖書册子(記錄類 포함)에 해당되는 것만 보아도 111,917册에 달하는 방대한 것이었다.

日帝朝鮮總督府는 舊璿源譜閣에 所藏해 두었던 《承政院日記》《日省錄》 등을 取調局으로 운반하였다.[67] 또한 朝鮮總督府取調局은 太白山城과 五臺山城의 史庫의 藏書도 접수하였다.[68] 江華 鼎足山城 史庫의 藏書도 기록상으로는 이 때 取調局이 다시 접수한 것으로 되

(64) 《圖書室保管書籍中德壽宮入級宮內省借渡調査表》(奎. 26706) 1册 참조.
(65) 《李王家藏書閣古圖書目錄》 1935에 의하면, 藏書閣 所藏圖書는 이 때의 圖書와 赤城山城 史庫의 藏書인 《朝鮮王朝實錄》과 各營이 所藏한 謄錄 儀軌 등에 1911년 이후 購入 또는 寄贈받은 圖書를 附加하여 設立된 것이다. 1935년 10월 1일 현재 藏書數는 古圖書가 5,382種 56,076册이었고, 新圖書가 2,577種 4,096册으로서, 合計 7,959種 60,172册에 달하는 방대한 것이었다.
(66) 朝鮮總督府取調局 《奎章閣圖書關係書類綴》(奎. 26764) 1册 참조.
(67) 《奎章閣圖書關係書類綴》 참조.
(68) 《奎章閣圖書關係書類綴》 참조.

어 있다.[69]

朝鮮總督府 取調局은 1911년 10월 四部分類法에 의거하여 圖書整理를 하려고 시도하여 그 準備를 시행하였다.[70] 이 때 取調局이 작성한 圖書臺帳은 ① 韓國本圖書目錄[71] ② 中國本圖書目錄[72] ③ 部別目錄[73] ④ 貸出·缺本·別庫藏置目錄[74] ⑤ 未整理目錄[75] 등이 있다. 이들은 물론 圖書整理의 準備를 위한 筆寫의 內部用 臺帳에 불과한 것이어서 아직 奎章閣圖書의 整理事業의 臺帳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었다.

日帝는 1912년 4월 朝鮮總督府 안에 參事官室이 설치되자 종래 取調局에서 관리하던 奎章閣圖書를 參事官室로 移管시키었다. 朝鮮總督府 參事官室에서는 奎章閣圖書 管理를 위하여 〈分室〉을 두고 圖書의 引受를 하는 한편 약간의 圖書를 購入하여 추가하였다. 1914년 10월 26일 현재 參事官分室이 取調局으로 부터 引受한 圖書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76]

參事官分室 圖書受入別 調査　　(1914年 10月 26日調査)

種　　別	部　　數	册　　數	備　　考
奎章閣으로부터의 引繼圖書	13,937 (1,468)	114,275 (5,631)	舊圖書目錄에 의한 것
五臺山史庫로부터의 送付圖書	599	4,136	五臺山史庫圖書目錄書에 의한 것
太白山史庫로부터의 送付圖書	1,216	5,777	太白山史庫圖書目錄에 의한 것
保管轉換을 받은 圖書	1,229	22,430	文獻備考 2,177册을 포함
新購入 謄寫 等의 圖書	371	1,623	1913年 3月 31日 以後
計	17,352 (1,468)	148,241 (5,361)	

備考 : 괄호안의 數値는 檢査의 結果 增加한 數字임.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臺韓末 奎章閣에서 管理하던 圖書와 記錄類가 13,937種 114,275册, ② 五臺山史庫로부터 송부한 圖書가 599種 4,136册, ③ 太白山史庫로부터 송부한 圖書가 1,216種 5,777册, ④ 保管轉換을 받은 圖書가 1,229種 22,430册, ⑤ 새로 購入하거나 謄寫한 圖書가 371種 1,623册, 合計 17,352種 148,241册이었다. 주목할 것은 舊韓末奎章閣에서 管理하던 圖書의 引受分을 參事官分室이 인수 후에 再點檢한 결과는 1,468種 5,361册이 더 增加되어 결국 參事官室이 取調局으로부터 引受한 圖書의 總計는 18,820種 153,602册이 되었다. 이 再點檢 결과 增加된 册數는 官衙의 記錄類라고 추정

(69) 《奎章閣圖書關係書類綴》 참조.
(70) 《製本用物品請取簿》(奎 26746) 1册 참조.
(71) 《朝板圖書目錄》(奎 26729) 2册, 《朝板圖書目錄》(奎. 26730) 1册 및 《書籍目錄臺帳》(奎. 26768) 1册 참조.
(72) 《唐板書籍目錄》(奎. 26756) 1册 및 《唐板圖書目錄》(奎. 26765) 1册 참조.
(73) 《朝板部別目錄》(奎. 26742) 1册, 《唐板部別目錄》(奎. 26754) 1册 및 《唐板四部假目錄》(奎. 26767) 1册 참조.
(74) 《德壽宮貸出書籍》(奎. 26705) 1册, 《別庫藏置缺本目錄》(奎. 26704) 1册 및 《別庫藏置書籍目錄》(奎. 26790) 1册 참조.
(75) 《未整理目錄》(奎. 26743) 1册 참조.
(76)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二) 참조.

되는데, 그 후 서울大學校 管理期까지 5,000餘册의 未整理 記錄類가 傳承되어 온 부분이 바로 이 册들이라고 추정된다.

朝鮮總督府 參事官分室은 위의 圖書를 引受한 외에 약간의 文獻蒐集을 시작하여 韓半島 각지에 있는 傳來의 金石文, 韓國本古圖書, 各地方의 邑誌, 古文書, 册板 등을 購入하거나 鈔寫하였다. 이 때 수집된 양은 金石文의 拓本과 寫本이 1,018種, 邑誌 959種, 購入 또는 鈔寫한 圖書가 59種 691册이었다고 한다.(77)

朝鮮總督府 參事官分室이 1915년 12월말 현재 報告한 册數는 ① 韓國本이 12,980種 70,232册(《文獻備考》 포함), ② 中國本이 6,481種 81,927册, 合計 19,461種 152,159册이었다.(78)

朝鮮總督府 參事官分室에서는 이 圖書들에 대하여 ① 〈朝鮮總督府圖書之印〉의 藏書印의 날인, ② 朝鮮本과 中國本의 區分, ③ 四部分類法에 의한 分類, ④ 圖書番號의 記入, ⑤ 圖書카드 작성, ⑥ 類別 臨時目錄 작성, ⑦ 간단한 圖書解題 등의 圖書整理作業을 시행하였다.

朝鮮總督府 參事官分室은 이 圖書들을 총괄하여 〈奎章閣圖書〉라고 命名하였다. 그 결과 ① 본래의 奎章閣圖書, ② 記錄類, ③ 史庫의 藏書, ④ 弘文館 集玉齋 侍講院 기타 他機關의 藏書, ⑤ 새로 購入한 圖書, ⑥ 새로 謄寫한 圖書, ⑦ 保管轉換된 圖書 등이 모두 〈奎章閣圖書〉에 統合되고 奎章閣圖書로서의 圖書番號가 記入되었다. 일반인들이 오늘날 자주 사용하는 〈奎章閣圖書〉는 대체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며, 실제로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奎章閣圖書의 圖書番號의 대부분은 이 때 붙여진 것이다.

朝鮮總督府 參事官分室은 圖書整理의 결과로서 다수의 圖書臺帳을 작성하였다. ① 引繼圖書의 目錄,(79) ② 韓國本과 中國本의 部類目錄,(80) ③ 圖書整理簿,(81) ④ 圖書臺帳,(82) ⑤ 圖書類別目錄,(83) ⑥ 貴重圖書目錄,(84) ⑦ 圖書索引簿,(85) ⑧ 太白山史庫圖書目錄,(86) ⑨ 五臺山史庫圖書目錄,(87) ⑩ 日本版圖書目錄,(88) ⑪ 邑誌臺帳,(89) ⑫ 地圖臺帳,(90) ⑬ 金

(77) 〈奎章閣圖書韓區本沿革〉《前揭書》 참조.
(78)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二) 참조.
(79) 《引繼圖書目錄》(奎. 26703) 1册 및 《奎章閣圖書引繼目錄》(奎. 26715) 4册 참조.
(80) 《朝鮮圖書部類目錄》(奎. 26714) 5册 및 《支那圖書部類目錄》(奎. 26713) 4册 참조.
(81) 《圖書整理準備簿》(奎. 26785) 1册, 《支那本圖書整理簿》(奎. 26726) 3册, 《圖書缺本調及整理簿》(奎. 26755) 1册 및 《圖書整理原稿》(奎. 26721) 4册 참조.
(82) 《朝鮮圖書臺帳》(奎. 26716) 8册 및 《支那圖書臺帳》(奎. 26719) 5册, 《圖書臺帳》(奎. 26781) 3册 참조.
(83) 《奎章閣圖書類別目錄》(奎. 26758,. 26759) 1册 참조.
(84) 《貴重圖書目錄》(奎. 26787) 1册, 《特別取扱圖書》(奎. 26774)2册 및 《承政院日記調査表》(奎. 26783) 1册 참조.
(85) 《朝鮮圖書索引》(奎. 26776,. 26777) 1册, 《朝鮮圖書索引簿》(奎. 26779) 1册 및 《支那圖書索引簿》(奎. 26724) 1册 참조.
(86) 《太白山史庫圖書目錄》(奎. 26738) 1册, 《太白山藏書目錄原稿》(奎. 26739) 1册 및 《奉化郡太白山史庫藏書目錄》(奎. 26741) 참조.
(87) 《五臺山史庫圖書目錄》(奎. 26736) 1册, 《五臺山藏書目錄原稿》(奎. 26737) 1册, 《平昌郡五臺山史庫藏書目錄》(奎. 26735) 1册 참조.

石文調査,[91] ⑭活字,[92] ⑮ 圖書總目錄[93]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들은 물론 모두 筆寫本으로서 朝鮮總督府 參事官分室의 非公開對內用이었다.

朝鮮總督府 參事官分室이 奎章閣圖書를 整理하던 시기에 他圖書와 記錄類 등이 대량으로 奎章閣圖書에 編入됨으로서 〈奎章閣圖書〉의 數量은 크게 增加했다. 그러나, 그 圖書와 記錄類에 대해서 日帝官僚들이 그 내용을 대체로 일단 審議하고 點檢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日帝는 이 때에 비교적 長期間에 걸쳐 상당한 人力을 動員해서 圖書와 記錄類를 每册 대체로 檢討하고, 일부 圖書들에 대해서는 간단한 〈解題〉까지 작성하였다.[94] 오늘날 奎章閣圖書 중의 記錄類를 열람하다 보면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당연히 꼭 있어야 할 資料가 인위적으로 빠져있음을 때때로 발견하게 된다. 만일 이것이 그 記錄 이후에 누군가 손을 대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면, 그 가능성은 朝鮮總督府 參事官分室이 奎章閣圖書를 整理한 시기(1912년~1922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朝鮮總督府는 소위 〈大正博覽會〉에 奎章閣의 圖書 一部와 活字와 古文書와 地圖들을 出品했다.[95] 그 후 活字 등이 거의 傳承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이 때에 日本人들이 奎章閣圖書와 古文書와 地圖들을 얼마나 잘 整理하고 保管했으며 얼마나 逸失되었는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

朝鮮總督府 參事官分室은 그들 나름대로의 奎章閣圖書 整理가 一段落되자 1921년에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이라는 제목으로 奎章閣圖書目錄을 간행하였다.[96] 이 때의 圖書目錄은 圖書名 册數 編著者名 編著年時 圖書番號 만을 간단히 기입한 假目錄의 성격을 가진 것이나, 이 目錄을 통하여 이 무렵의 奎章閣圖書의 實態를 알 수 있다.

朝鮮總督府는 또한 參事官分室에서 수행한 奎章閣圖書의 一部의 간단한 解題를 모아 1919년에 《朝鮮圖書解題》를 간행하였다.[97]

日帝는 다시 1922년 11월에 奎章閣圖書를 朝鮮總督府 學務局에 移管시키었다. 學務局에서는 學務課에 分室을 두어 奎章閣圖書의 管理를 전담케 하였다. 그러나 이 때에는 整理作業은 전혀 진행하지 않고 保管만을 위주로 하였다.[98] 事務用 圖書目錄 조차 작성하지 않

(88) 《日本版圖書目錄》(奎. 26763) 1册 참조.
(89) 《邑誌臺帳》(奎. 26750) 1册 참조.
(90) 《地圖整理簿》(奎. 26732) 1册 참조.
(91) 《金石文調査簿》(奎. 26762) 1册 참조.
(92) 《實錄字目錄》(奎. 26752) 2册 참조.
(93) 《朝鮮總督府圖書目錄》(奎. 26792) 1册, 《朝鮮古書目錄》(奎. 26789) 1册, 《朝鮮圖書總目錄》(奎. 26778) 1册 및 《朝鮮圖書目錄補助簿》(奎. 26780) 1册 참조.
(94) 《朝鮮圖書解題ニ關スル書類》(奎. 26791) 1册 참조.
(95)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一) 참조.
(96)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서울大 一般圖書. 0440.2), 1921 참조.
(97) 《朝鮮圖書解題》(서울大 一般圖書,. 0480.14), 1919 참조.
(98) 《日省錄・承政院日記事故調簿》(奎. 26744) 1册 및 《備局謄錄・內閣日曆調査簿》(奎. 26784) 1册

았다.[99]

第6段階는 日帝京城帝國大學이 奎章閣圖書를 管理하던 시기이다.

서울에 1923년 京城帝國大學이 설립되고, 1930년에 同大學附屬圖書館이 준공되자, 그 전후에 朝鮮總督府는 3次에 걸쳐 奎章閣圖書를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에 移管시키었다.

第1次는 1928년 10월에 圖書 2,074種 9,553册이 移管되었는데,[100] 그 도서내용은《度支定例》이하 주로 韓國本 圖書가 중심이 되었다.[011]

第2次는 1930년 10월에 圖書 1,086種 15,970册이 移管되었는데, 그 도서내용은《周易傳儀大全》이하 주로 中國本이 중심이 된 것으로서, 그 중에서 中國本이 12,667册이었고 韓國本이 3,303册이었다.[102]

第3次는 1930년 10월에 圖書가 記錄類와 未整理圖書 등 13,471種 136,038册이 대량으로 移管되었는데, 그 도서내용은 韓國本 圖書와《備局謄錄》등 韓國本 記錄類가 중심이 되었다.[103]

京城帝國大學에서는 第1•2次로 移管된 中國本 중에서 唐板本은 모두 빼내어〈一般東洋圖書〉에 分類 編入시켜 버리고, 나머지 3,520種 12,729册만 奎章閣圖書에 編入시켰다. 第3次에 移管된 圖書 중에서는《增補文獻備考》4,854册 등 複本이 다수인 것을 제외하고, 128,184册 만을 前記 殘餘分과 함께 奎章閣圖書에 編入시켰다.[104]

그 결과 京城帝國大學이 朝鮮總督府 學務局으로부터 인수한 奎章閣圖書는 總計 161,561册이었는데, 京城帝國大學이〈一般東洋圖書〉등으로 編入시켜버린 것이 20,648册이었고, 奎章閣圖書로 編入시킨 것이 140,913册이었다. 京城帝國大學에 移管된 후 奎章閣圖書는 學務局 관리시대보다 減少된 것이었다.

奎章閣圖書가 京城帝國大學에 移管되자 日帝下 韓國 知識人들 사이에서는 奎章閣圖書를 韓國人 公衆에게 開放 閱覽케 하라고 요구하는 輿論이 일어났다. 좀 길지만 당시 韓國 知識人의 주장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논평을 하나의 예로 인용하여 두기로 한다.

「奎章閣은 朝鮮의 國立書院이라 할만한 것으로서, 멀리는 高句麗 新羅 百濟로부터 比較的 가깝기는 李朝時代에 이르는 凡四千年間의 古稀書 十五萬卷을 珍藏한 一大文庫로서, 朝鮮이 가진 寶物의 하나임은 勿論 延하여는 世界의 한 文獻이 되어 있다. 朝鮮史와 그 史料에 關한 文獻도 相當히 많은 外에, 政治 軍事 法律 地理 儀軌 系譜 傳記 藝術 등 各方面의 珍書며, 中國書籍에 있어서도 有名한

참조.

(99)《朝鮮圖書添付目錄》(奎. 26722,. 26723) 1册 참조.

(100) 朝鮮總督府 學務局 學務課分室은 移管時에 京城帝國大學에 2,074種 9,551册을 인계했는데, 京城帝國大學이 圖書原簿에 登錄한 결과 2册이 增加되어 9,553册이 되었다.

(101) 京城帝國大學《保管轉換引繼圖書目錄》(奎. 26728) 第1册 참조.

(102)《保管轉換引繼圖書目錄》第2册 참조.

(103)《保管轉換引繼圖書目錄》第3册 참조.

(104)〈奎章閣圖書韓國本沿革〉《前揭書》참조.

圖書集成을 비롯하야 漢唐古書籍이 具備하다고 한다.

이러한 朝鮮의 一大寶庫는 이제 學務局의 保管으로부터 京城帝大에 移管된다고 하니,……이 貴重한 文庫가 京城帝大에 移管된 以後에 있어서도 오히려 從來와 같이 거의 死藏되고 만다면 이 文庫가 寶物로서의 價値를 發揮할 바이 적을 것은 贅語를 不要이다. 이 엇지 無理 아니라 할 것이냐.

奎章閣 文庫가 學務局의 保管에 있을 때에도 그를 閱覽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學務局의 許諾을 받았어야 하였다.……公衆에 대한 公開를 꺼려 한다면 이는 自己矛循에 陷하는 所以가 되고 말 것 아닐가.

萬一에 奎章閣 古籍이 朝鮮의 寶物될 수 있다면 그는 朝鮮의 過去文化를 硏磨하야 그를 基礎로 하여 가지고 新文化를 建設함에 有力한 資料된다는데 있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珍文獻일 수록 大衆에 公開하야 朝鮮文化硏究에 對한 刺戟과 便利를 주어야 거기에서 奎章閣文獻의 價値가 發揮될 것이어늘, 從來와 같이 寶物이라는 觀念에 사로잡히어 그의 公開를 두려워하야 거의 死藏狀態에 둔다면 이는 寶物의 價値를 얼마쯤 損傷함이니 이 엇지 矛循 아니라 할 것이냐. 그러므로 奎章閣文獻은 嚴重한 監視下에 大衆에게 公開할 性質의 것으로 본다.」[105]

그러나 京城帝國大學은 奎章閣圖書를 韓國人 公衆에게 公開 閱覽시키지 아니하고, 同大學의 敎授들에게만 이를 閱覽시키었다.

京城帝國大學이 奎章閣圖書를 引受할 때 그 第3次分 안에는 量案 收稅成册……등 未整理 상태의 記錄類가 대량 포함되어 있었다. 京城帝國大學은 1936년경에 奎章閣圖書를 整理할 計劃을 세웠던 것 같다.[106] 그러나 뜻밖에도 奎章閣圖書整理作業을 실행하지는 않았다.

京城帝國大學은 引受한 奎章閣圖書에 〈京城帝國大學圖書章〉의 藏書印을 날인하고, 參事官分室에서 이미 整理한 圖書들에 한하여 圖書原簿를 작성하였다. 현재의 奎章閣圖書에 〈朝鮮總督府圖書之印〉과 함께 〈京城帝國大學圖書章〉의 藏書印이 날인되어 있는 것은 이 때 찍힌 것이다.

京城帝國大學은 奎章閣圖書整理事業은 하지 않았으나, 圖書館 事務用으로 奎章閣圖書의 ① 圖書目錄[107] ② 貴重本目錄[108]을 작성하였다. 또한 京城帝國大學은 特殊目的을 위하여 ① 榜目[109] ② 活字印刷[110] ③ 秘密地圖[111]에 대한 圖書臺帳을 작성하였다. 물론 이들은 筆寫本의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 內部用이었다.

그러나 京城帝國大學은 더 이상 奎章閣圖書整理事業이나 解題事業도 하지 않고, 圖書目錄도 간행하지 않았으며, 奎章閣圖書의 閱覽을 一般 韓國人 公衆에게 公開하지도 않은채

---

(105) 《中外日報》 1930年 9月 26日字 社說 〈奎章閣의 古籍, 公開함이 當然〉
(106) 京城帝國大學 《奎章閣貴重圖書關係書類》(奎 26786) 〈附 : 奎章閣圖書整理施行章程〉 참조.
(107) 《奎章閣朝鮮本圖書目錄》(奎. 26782) 10册, 《奎章閣朝鮮圖書目錄》(奎. 26717) 1册 및 《奎章閣圖書番號順目錄》(奎. 26775) 참조.
(108) 《奎章閣貴重圖書關係書類》(奎. 26786) 1册 및 《奎章閣朝鮮特別圖書目錄》(奎. 26718) 1册 참조.
(109) 《榜目一覽》(奎. 26751) 1册 참조.
(110) 《朝鮮活字印刷資料展覽準備調査資料》(奎. 26793) 1册 참조.
(111) 《秘密地圖保管原簿》(奎. 26733) 1册 및 《秘密地圖關係書類》(奎. 26734) 1册 참조.

1945년 8월 15일까지 奎章閣圖書를 관리하였다.

五. 서울大學校管理期의 奎章閣圖書

第7段階는 1945년 8·15解放後 서울大學校附屬中央圖書館이 奎章閣圖書를 管理하던 시기이다.

國立 서울大學校가 1946년 10월 15일 설립되어 서울大學校에서 舊京城帝國大學의 모든 施設을 接受하게 되자, 奎章閣圖書도 다시 찾아서 서울大學校가 接受하여 그 附屬中央圖書館이 관리하게 되었다.

서울大學校附屬中央圖書館에서는 우선 奎章閣圖書의 閱覽을 모든 國民에게 公開하였다. 그러나 解放直後의 사정으로 奎章閣圖書의 整理事業은 시행하지 못하였다.

1950년 6·25動亂 중에는 다음 표와 같이 《朝鮮王朝實錄》(江華 鼎足山本 1,248册, 太白山本 840册, 東大所屬 朝鮮王朝實錄 25册), 《承政院日記》 2,963册, 《承宣院日記》의 23種 483册, 《日省錄》 2,281册, 《備邊司謄錄》 278册, 《論綍》 539册, 合計 8,657册을 긴급히 釜山으로 疎開했던 것으로 記錄이 남아 있다.(112)

奎章閣疎開圖書目錄一覽表

圖書名	圖書番號	總數	缺册數	現在數
江華本朝鮮王朝實錄	12719~12760	1,253	5	1,248
太白本朝鮮王朝實錄	12761~12787	845	5	840
承政院日記	12788	3,047	84	2,963
承宣院 日記外 二十三種	12789~12810 13030			483
日省錄	12811~12817	2,331	50	2,281
綸綍	12855~12862	567	28	539
謄錄	12907~12909 12869 15044~	321	43	278
東大所屬 朝鮮王朝實錄				25
合計			215	8,657

당시 위의 貴重圖書의 疎開에 實務를 담당한 당시의 서울大學校 附屬中央圖書館 副圖書員 白麟씨의 證言을 보면 다음과 같다.

「一. 奎章閣圖書中 貴重圖書 疎開經緯

1950年 12月 10日 當時 館長 李丙燾 敎授의 指示에 따라 本人은 第1次로 承政院日記 3,045册을 釜山에 疎開하여 同年 12月 17日 釜山管財處(釜山市 光復洞 所在) 倉庫 四層에 國立博物館, 民族博

(112) 서울大學校附屬中央圖書館《소개귀중도서목록》, 1952 참조.

物館, 德壽宮博物館, 國立圖書館 등의 圖書와 함께 保管하였으며(1950年 12月 19日字 本館 司書課日誌 參照) 第二次로 同年 12月 22日 當時 서울大學校 附屬病院長 金斗鍾敎授에 依하여 李朝實錄(江華本) 1,188册 및 日省錄 2,329册을 釜山에 疎開하였던 바 前記 倉庫가 狹少하므로 慶南 大韓産婦人會(釜山市 大橋洞 所在) 下層 倉庫에 于先 保管하였고(50年 12月 23日字 本館 司書日誌 參照), 第三次로 同年 12月 28日 當時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司書 扈基顯氏에 依하여 疎開한 李朝實錄(太白山本) 864册과 備邊司謄錄 273册도 亦是 前記 婦人會倉庫로 移藏하였음(1950年 12月 28日字 本館司書日誌 參照). 그後 1951年 1月 23日 同 婦人會로부터 前記 倉庫의 明渡要請을 받고 管財處 倉庫에 疎開하였던 第一次分 承政院日記를 慶尙南道 內務局 會計課 第二倉庫를 借用하여 移藏하고 同時에 婦人會倉庫에 保管하였던 第二次分 疎開圖書 및 第三次分 疎開圖書 全部를 前記慶尙南道廳 倉庫로 移藏·保管하였던 것임(1950年 12月 30日字 本館司書日誌 參照)」[113]

위의 貴重圖書들은 1953년 還都 후에 書庫에 復歸되었다고 한다. 그 밖의 奎章閣圖書는 서울大學校 附屬中央圖書館 書庫에 그대로 남겨둔 채 避亂했었다. 戰時 중에 서울大學校 本部와 文理科大學 캠퍼스를 共産軍과 美軍이 차례로 占領했었으나, 書庫에 남겨두었던 奎章閣圖書는 큰 變動없이 保存되었다고 한다.[114] 書庫에 남겨두었던 奎章閣圖書가 戰時中에 어느 정도 完全히 保存되었는지는 舊京城帝國大學이 작성한 奎章閣圖書目錄臺帳이 남아있고 서울大學校가 그 후 圖書目錄臺帳을 작성했으므로 양자의 비교를 통하여 상당히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115]

서울大學校 附屬中央圖書館이 奎章閣屬書 整理事業을 시도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 부터이다. 서울大學校는 1962년 11월 25일 總長의 諮問機關으로 서울大學校 附屬中央圖書館 안에 〈奎章閣圖書委員會〉를 두고 奎章閣圖書의 保存 管理 및 活用에 관한 사항을 調査審議하도록 하였다.

서울大學校 附屬中央圖書館은 당시 豫算의 결핍으로 未整理圖書의 整理事業을 완결하지 못한 채, 우선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1962년에 《奎章閣圖書韓國本書名索引》 1部 4册을 작성하고, 1963년에 《奎章閣圖書中國本書名索引》 1部 1册을 작성하여 鈔寫하였다.

서울大學校 附屬中央圖書館은 그 이듬해인 1964년에 위의 索引作業에 뒤이어 旣整理分 奎章閣圖書韓國本의 圖書目錄으로서 《奎章閣圖書目錄》 6册을 謄寫本으로 간행하였다.[116]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附設 東亞文化硏究所에서는 韓國硏究의 기초작업으로서 奎章閣圖書의 目錄 작성과 간행의 필요를 절감하고, 「하바드·옌칭硏究所」의 支援資金을 얻어 서울

(113) 《서울大學校二十年史》 1966. p. 89 및 《서울大學校三十年史》 1976. p. 56.

(114) 〈奎章閣圖書韓區本沿革〉 《前揭書》 참조.

(115) 《서울大學校二十年史》 p. 9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4후퇴후에 共産軍은 奎章閣圖書를 가마니에 넣어 倉庫로 옮기고, 以北으로 수송하려고 했던 것 같다. 이 자료에는 收復 後에 破損된 부분을 발견했다고 記錄하고 있으며, 奎章閣圖書와 一般圖書를 合하여 6·25動亂 중에 散佚된 圖書를 약 萬餘册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奎章閣圖書의 破損分과 散佚分이 몇 册이나 되는지는 앞으로 더 檢討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일 것이다.

(116) 《奎章閣圖書目錄》(서울大一般圖書. 015.51, Se67) 6册, 1964 참조. 이 目錄은 韓國本旣整理分만을 수록한 것으로서, 第1册이 集部, 第2~4册이 史部, 第5册이 經·子部 및 補遺, 第6册이 書名索引으로 되어 있다.

大學校 附屬中央圖書館과의 제휴하에 圖書目錄카드를 작성한 다음 四部分類法에 의거하여 1965년 12월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을 간행하였다. 이 때 확인된 奎章閣圖書韓國本은 19,708種 73,421册이었고, 中國本은 5,912種 65,568册이었으며, 未整理分이 약 5,000册이라고 추정되었다.(117)

東亞文化研究所의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에는 前記한 서울大學校 附屬中央圖書館의 《奎章閣圖書目錄》(謄寫本) 6册에 수록된 圖書외에도 同圖書館의 圖書臺帳에 기재되어 書名을 알 수 있는 〈末整理分〉의 書名을 附錄으로 수록하였다. 당시 未整理圖書의 整理事業이 수행되지 못했으므로 未整理圖書를 모두 分類하여 수록할 수 없었다. 旣整理圖書에도 약간의 漏落分이 있었다. 東亞文化研究所의 《總目錄》이 간행됨으로써 奎章閣圖書의 利用率은 급격히 增加하게 되었다.

서울大學校 附屬中央圖書館에서는 다시 하바드·옌칭研究所의 支援資金을 얻어 1972년에 《奎章閣圖書中國本總目錄》을 공판으로 간행하였다. 그러나 이 目錄은 日帝京城帝國大學이 〈一般東洋圖書〉에 편입시킨 奎章閣圖書中國本을 수록하지 못하였고, 四部分類法을 다 관철하지 못하여 編著者名 가나다順으로 分類함으로서, 긴급한 필요에 응한 〈假目錄〉의 형태로 사용하게 되었다.

第8段階는 서울大學校가 冠岳캠퍼스로 移轉한 후 서울大學校 圖書館내에 〈奎章閣圖書管理室〉이 신설되어 奎章閣圖書 관리를 전담한 시기이다.

서울大學校는 1975년 冠岳캠퍼스로 이전함과 동시에 各單科大學圖書館을 中央圖書館과 統合하고 〈서울大學校 附屬中央圖書館〉을 〈서울大學校 圖書館〉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또한 서울大學校는 〈奎章閣圖書管理室〉을 圖書館 안에 新設하고 圖書館 6層 建物 중에서 第1·2層을 奎章閣圖書管理에 배정하였다. 또한 획기적인 것은 政府豫算에서 〈奎章閣圖書整理〉의 사업이 獨立項目으로 설정되어 배정됨으로서 奎章閣圖書管理室이 본격적인 奎章閣圖書整理事業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奎章閣圖書는 1975년 1월 20일 東崇洞캠퍼스로부터 冠岳캠퍼스의 새 書庫로 移轉하였다.

서울大學校는 奎章閣圖書의 保管을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火災에 대한 대책으로 建物 設立 당시에 書庫에 〈炭酸깨스(Co_2) 自動消火裝置〉를 설치하였다. 또한 濕度와 溫度에 대한 대책으로 1980년 8월에 〈大型 自動除濕機〉를 書庫에 설치하였다.

서울大學校 圖書館은 奎章閣圖書管理室의 新設 직후에 一般古圖書, 해방 후에 구입한 古圖書, 一簑文庫·가람文庫·想白文庫·經濟文庫 중의 古圖書의 管理를 奎章閣圖書管理室에 移管하였으며, 奎章閣書庫에 편입하여 보존케 하였다. 이에 따라 奎章閣圖書管理室이 관리하고 圖書는 크게 증가되었다.

奎章閣圖書管理室에서는 신설후 國庫豫算으로 본격적인 奎章閣圖書整理事業을 시작하여

(117) 〈奎章閣圖書韓區本沿革〉《前揭書》 참조.

다음과 같은 몇가지 事業을 실시하였다.

奎章閣圖書韓國本 解題事業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1978년에《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經·子部〉1册, 1979년에 同〈集部(1)〉1册, 1980년에 同〈集部(2)〉1册, 1981년에 同〈史部(1)〉1册을 간행하였다. 解題事業은 長期年次事業으로서 奎章閣圖書 韓國本 전부를 完結할 때까지 계속되는 사업이다.

또한 奎章閣 未整理圖書에 대한 整理事業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1981년 5월에 이를 完結하였다. 未整理圖書에 대해서는 學界와 國民의 많은 關心이 집중되어 왔고 批判이 있어 왔으며 서울大學校 圖書館도 꾸준히 그 整理를 추진하여 오다가 奎章閣圖書管理室이 1981년 5월에 未整理圖書整理를 完結하였다. 1981년 6월 이후에는 奎章閣圖書에〈未整理圖書〉는 존재하지 않는다.

〈古文書〉整理事業은 奎章閣圖書管理室 신설 후 圖書館으로부터 50,000件을 移管받아 본격적인 整理 解題 表具修理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古文書 全部의 整理와 册子가 發刊될 때까지 계속되는 長期年次事業이다.

奎章閣圖書 唯一本에 대한〈마이크로 필림〉撮影事業은 1964년부터 시작했으나 豫算缺乏으로 지지부진하다가 197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 長期年次事業이다.

奎章閣圖書 중 破損된 部分에 대한〈表具 修理 製本〉事業은 圖書 1,830册과 戶籍臺帳 204册에 대하여 完結될 때까지 계속되는 長期年次事業이다.

奎章閣圖書〈藏書印捺印〉事業은 韓國의 民族文化遺產인 奎章閣圖書에 日帝가 날인해 놓은〈朝鮮總督府圖書之印〉〈京城帝國大學圖書章〉의 藏書印 위 또는 옆에〈서울大學校圖書〉의 藏書印을 捺印하고 藏書點檢과 동시에 圖書原簿를 補完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80년 8월 1일부터 시작하여 奎章閣圖書 韓國本에 대한 藏書印 날인을 1981년 7월에 完結하였으며, 계속하여 中國本에 대한 藏書印 날인을 1982년 5월에 完結하는 短期事業이다.

奎章閣圖書〈目錄編纂事業〉은 奎章閣圖書管理室이 관리하고 있는 圖書에 대한 圖書目錄을 公刊하는 사업이다. 奎章閣 未整理圖書의 整理가 完結됨에 따라 圖書目錄의 편찬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奎章閣圖書管理室에 移管된 ① 解放後 購入한 古圖書와 ② 經濟文庫의 古圖書는 圖書目錄이 아예 없고, 그 밖의 奎章閣圖書管理室에 編入된 ③ 一般古圖書 ④ 一簑·가람·想白文庫의 古圖書는 공판 또는 謄寫로 된 目錄은 있으나 오래 전에 制限部數가 간행되어 이제는 구해 볼 수 없는 위에 分類方法과 體裁가 各樣 各色이므로, 統一된 分類方法에 의한 圖書目錄의 公刊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奎章閣圖書管理室에서는 이에 東亞文化硏究所編《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의 使用價値를 그대로 保存하면서, 위의 필요에 응하여 현재 奎章閣圖書管理室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奎章閣圖書(및 古圖書)를 포괄하는〈綜合目錄〉으로서 1981년에《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을 간행하였다.

그러나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에서는 본래의 各種圖書의 混淆를 엄격히 방지하기 위하여 각 圖書 마다 본래의 圖書의 記號를 붙여서 그 본래의 所屬을 명백히 구분하였다. 그러므로 第7段階의 奎章閣圖書 韓國本을 보려면 《總目錄》이 有用하며, 第8段階의 奎章閣圖書 韓國本을 보려면 《綜合目錄》이 有用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 고찰한 것이 1776년 奎章閣이 創設된 이후 1981년까지의 奎章閣圖書가 變遷되어 온 歷史의 줄거리이다.

六. 맺 음 말

奎章閣圖書는 이상에서 간단히 고찰한 바와 같이 韓國民族의 처지와 軌를 같이하여 그 榮辱을 함께 나누어 왔다.

奎章閣圖書는 널리 알고 있는 바와 같이 歷史는 물론이오 言語 文學 政治 經濟 社會 文化 哲學 地理 軍事 法律 藝術 科學 등 모든 分野에서 그것이 韓國硏究와 東洋硏究에 관한 것이면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寶庫이다.

奎章閣圖書는 韓國의 民族文化의 精髓의 하나이며, 世界에 자랑할 만한 文化遺產이다. 따라서 奎章閣圖書는 韓國民族 전원의 것이며, 감히 一個人이나 一學科나 一大學校가 전유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韓國民族 全員이 가진 寶物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大學校가 奎章閣圖書를 所藏하여 管理하고 있는 것은 따라서 民族으로부터 委任받은 큰 榮譽이며, 그 만큼 서울大學校의 責任이 莫重하다고 할 것이다. 奎章閣圖書의 빈 종이 한 장이라도 철저히 잘 保管하여 子孫萬代에 이 寶庫가 永久히 잘 傳承되도록 온갖 노력이 경주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이 寶庫도 活用하여 그것이 자기시대의 民族文化의 創造와 發展에 쓰이지 않으면 흙 속에 묻힌 寶物의 처지를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가 奎章閣圖書의 活用과 硏究를 강조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